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12. .

제안자 : 행정안전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개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%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내용으로, 지역자원시설세 적용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.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중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”을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”을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(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”를 “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(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이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[illegible]

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 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: <u>화력발전 소·원자력발전소 가 있는 시·군</u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화력발전소</u> · <u>원자력발전소</u> <u>및 폐기물매립시 설이</u>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 - <u>화력발전소·원 자력발전소 및 폐 기물매립시설(「지 방세법」 제142조 제2항제2호 라목 의 폐기물 매립시 설을 의미한다. 이 하 같다)이</u> ----
2. (생략) ④ (생략) 제29조의2(자치구 조 정교부금) ① (생 략) ② 특별시장 및 광 역시장은 <u>화력발전 · 원자력발전</u> 에 대 한 각각의 지역자 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	2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제29조의2(자치구 조 정교부금) ① (현 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화력발전</u> · <u>원자력발전</u> 및 <u>폐기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2. (개정안과 같음) ④ (개정안과 같음) 제29조의2(자치구 조 정교부금) ① (개 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

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 치구 및 제29조제3 항제2호에 따른 시 . 군에 균등 배분 한다.		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<u>화력발전·원자 력발전</u>에 대한 지 역자원시설세의 1 00분의 65에 해당 하는 금액(「지방 세징수법」 제17 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 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: <u>화력발전 소·원자력발전소</u> <u>간</u> 있는 자치구			1. <u>화력발전·원자 력발전 및 폐기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화력발전소</u> <u>· 원자력 발전 소</u> <u>및 폐기물매립시</u> <u>설이</u>-----		1. (개정안과 같음)
2. (생략) ③ (생략)			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		2.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모경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8.

발 의 자 : 모경중 · 이용우 · 민병덕
김현정 · 김한규 · 황정아
박범계 · 김 윤 · 김동아
송재봉 · 남인순 · 김교홍
정진욱 · 이준석 · 이광희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,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.

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,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 따라서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·군·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%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(안 제29조 및 제29조의2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개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%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내용으로, 지역자원시설세 적용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.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중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”을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”을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(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”를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”로, “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가”를 “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(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이”로 한다.

제29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”을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”을 “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”로 “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가”를 “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1항·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에 대하여 부과·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시·군 조정교부금) ① 시·도지사(특별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(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)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·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	제29조(시·군 조정교부금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시·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·도세(<u>화력발전·원자력발전</u>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)의 총액	1. ----- ----- <u>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「지방세법」 제142조 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</u>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·도지사는 <u>화력발전·원자력발전</u> 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·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	③ ----- <u>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(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</u> -----

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·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.

1. 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: 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·군

2. (생략)

④ (생략)

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① (생략)

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

-----.

-----.

1. 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-----

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(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이 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-----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

-----.

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·군에 균등 배분한다. 1. <u>화력발전·원자력발전</u>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: <u>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가</u> 있는 자치구 2. (생략) 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. 1. <u>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<u>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</u>---- 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